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40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및 관련 교육 규정 삭제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10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회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4. 15.

다. 회 부 일 : 2026.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시공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이 산림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및 시공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의7제4항 및 제42조의10제3항 삭제).

Ⅲ. 검토의견

1.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및 관련 교육 규정 삭제

개정안은 산림복원사업의 시공 주체를 산림토목 분야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조합(또는 중앙회)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과 이와 연계된 시공자 교육·훈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7제4항 및 제42조의10 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 · 시행 등) ① ~ ③ (생략) ④ <u>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u> ⑤ (생략)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 · 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①·② (생략) ③ <u>제42조의7제4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u>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현행	개정안
<u>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복원사업의 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복원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 산림복원사업의 법령상 근거 및 입법 배경

산림복원사업은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2019년 ‘산림복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산림복원의 원칙·기본계획 수립·대상지 실태조사·타당성 평가·시행(시공)·사후 모니터링·전문인력 양성 등의 추진체계로 운영되고 있음.¹⁾

그런데 산림복원의 원칙이 ‘재해 예방 및 복구’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으로 확대되면서,²⁾ 식생·토양·물길 복원 등 생태적 전문성을 갖춘 수행체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 산림복원사업 추진실적 】

(단위 : ha, 개소)

구 분	산림생태복원(ha)					백두대간 생태축 (개소)	대 구 모 산림복원 (개소)
	계	백두대간 및 정맥	DMZ 일원	섬숲	기타		
계	1713.0	178.0	453.9	411.4	669.7	15	17
2006~ 2017	472.3	133.5	223.6	11.6	103.6	6	7
2018	46.3	4.0	18.2	0.9	23.2	-	2
2019	27.4	14.5	8.9	-	4.0	1	2
2020	58.0	10.5	26.9	10.0	10.6	3	1
2021	86.5	2.5	36.2	43.0	4.8	-	1
2022	164.1	2.0	31.3	122.8	8.0	1	1
2023	319.2	3.0	36.3	76.5	203.4	2	-
2024	258.0	4.0	36.0	70.8	147.2	-	3
2025	281.2	4.0	36.5	75.8	164.9	2	-

※ 자료: 산림청

1) 참고자료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참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산림내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복원한다.
4. 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5. 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최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5.12월)으로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설계·감리)’이 도입되었으나,³⁾ 현행법상 산림복원사업의 시공 자격은 “산림토목 분야 산림사업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산림복원 전문인력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현재 산림복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산림토목법인은 임도·사방·산지 복구에 전문성이 있는 ‘산림공학기술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생태적 회복이 핵심인 산림복원 사업 수행에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산림복원협회’ 등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현행법의 산림복원사업 시공자를 산림토목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산림복원 전문인력인 ‘산림복원기술자’로 구성된 산림복원법인을 통해 독자적인 시공 수행체계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7. (생략)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것

(시행령)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자격 요건 생략) <개정 2025. 12. 16.>

기술 종류	업무 범위
산림복원기술자	1. 산림복원사업의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평가 2. <u>산림복원사업 설계·시공 및 감리</u>

※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산림기술인력으로 산림청장이 기술자격을 관리함.

(시행령)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③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등록 요건 생략) <개정 2025. 12. 16.>

구분	세부분야	업무 범위
전문업	산림복원	1. 산림복원사업의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평가 2. <u>산림복원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정성 분석</u>

※ ‘산림기술용역’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는 것이고, ‘산림기술용역업’은 산림기술용역 수행업체로 산림청장이 등록·관리함.

마련(시행령 별표 2 개정4)이 요구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을 산림토목법인 및 산림조합(또는 중앙회)이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산림복원기술자(인력), 산림복원전문업(설계·감리), 산림복원법인(시공)의 산림복원사업 수행체계를 일원화하여 산림복원에 필요한 종합적 전문기술력을 제고하고 전문복원업 확보로 증가하는 산림훼손지 복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시행령)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림토목 관련 사업
4.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사업
5.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
6. 숲길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별표 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4. <u>산림토목</u>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u>산림공학기술자</u> 2명 이상	3억원 이상	사무실
		2) 기술초급 이상인 <u>산림공학기술자</u> 3명 이상		

※ 현재 시행령의 산림토목사업 업무범위에 산림복원은 없는 실정으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산림복원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만, 산림청은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나, ‘산림복원법인’ 신설을 위한 시행령 정비 이전에는 산림조합(또는 중앙회)만 산림복원사업이 가능하게 되므로,⁵⁾

‘산림복원법인’ 도입 전 산림복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칙에 종전의 산림토목법인이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⁶⁾

현재('26.4월 기준) 산림기술자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복원기술자 제도 도입(2025.12월) 이후 양성 인력은 30명에 불과하여 산림복원법인의 도입 초기 인력 및 시공 역량 등 기반을 갖추기 전까지 기존 산림토목법인의 한시적 참여가 필요해 보이므로,

기존 산림토목법인이 산림복원사업을 일정 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거나,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을 집행 여건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5) 안 제42조의7제4항 삭제 시에도 현행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복원사업 시공이 가능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6) 유예기간을 3년으로 두는 이유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5]에 따라 산림복원사업 시공 시 3억 초과 공사는 ‘중급 산림복원기술자’가 필요하며, 중급 산림복원기술자는 최소 3년의 경력이 요구되어 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한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5.12.)에서 유예기간 3년간 중·고·특급 ‘산림공학기술자’가 산림복원 전문교육 이수 시, 중·고·특급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한편, 개정안의 산림복원사업 시공자 교육·훈련 규정(안 제42조의10제3항)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8)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에 포함되는 규정이므로, 이 조항이 없어도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의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산림기술자 현황 】

구 분	기술등급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월 기준)
합계	-	55,520	59,919	64,164	68,112	70,348
산림경영 기술자	계	41,402	44,530	47,512	50,379	51,778
	기술	소계	17,828	19,510	21,015	22,348
		특급	185	192	198	203
		고급	2,991	3,175	3,420	3,709
		중급	2,317	2,403	2,520	2,796
		초급	12,335	13,740	14,948	16,356
산림공학 기술자	계	12,123	13,066	13,961	28,031	28,712
	특급	186	191	198	14	14
	고급	2,847	3,017	3,250	8,528	8,737
	중급	1,903	1,947	2,021	19,489	19,961
	초급	7,187	7,911	8,508	14,738	15,421
녹지조경 기술자	계	1,995	2,323	2,691	203	205
	특급	100	110	134	3,426	3,523
	고급	746	882	1,021	2,105	2,236
	중급	322	346	370	9,004	9,457
	초급	827	985	1,166	2,995	3,119

7) 현행법 제42조의7제4항을 삭제하는 대신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을 ‘산림복원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행법 체계상 산림사업의 종류, 범위 및 자격요건 등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산림복원 분야의 산림사업법인만 법률에 규정할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 중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

산림복원 기술자	계	0	0	0	0	30
	특급	0	0	0	0	2
	고급	0	0	0	0	23
	중급	0	0	0	0	2
	초급	0	0	0	0	3

※ 자료: 산림청

【 산림사업법인 현황('26년 4월 기준) 】

구분		산림경영계획 산림조사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조성 ·관리
합계	3,235	54	1,454	432	61	1,061	173

※ 자료: 산림청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⁹⁾

문 의 처
02)6788-5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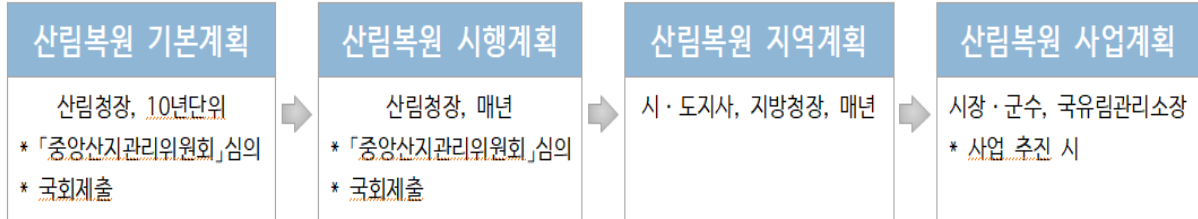
9)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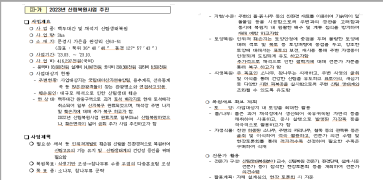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 자료 : 산림청

□ 계획체계 :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지역계획 → 사업계획



□ 추진절차 : 대상지 조사 → 타당성평가 → 복원 → 모니터링 → 후속조치

추진절차	주요내용
산림복원 대상지 실태조사	■ 연 1회, 현장조사(서면, 항공 병행) ■ 훼손원인, 규모 및 복원 필요성 등 조사 ■ 시행주체 :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 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 평가 ■ 시행주체 :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산림복원사업 계획수립	■ 산림복원사업 실행 계획 수립 ■ 복원목표, 대상지 현황, 적용공법 및 모니터링 계획 등 ■ 시행주체 :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산림복원사업 실행	■ 산림복원 공사의 실행(설계, 시공, 감리) * 설계 완료 전 설계심의(중앙, 자체) ■ 자생식물과 자연재료 활용 ■ 시행주체 :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 준공 후 10년 이상 실시 - 사업 준공 후 1, 2, 5, 10년차에 실시 * 필요시 3, 4년차 추가 실시 ■ 복원 상태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 시행주체 :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산림복원지 사후 유지관리	■ (유지) 풀베기, 외래식물 관리 등 관리 ■ (보완) 보식, 피해 발생지 등 보완 ■ (수정) 개선안 마련 및 목표 수정 ■ 시행주체 :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